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3.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1월 14일, 박성준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6년 1월 1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2.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2.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2026.3.1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성준 의원)

현행법은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

하면 자격을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의 자격 재교부를 금지하고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피해 최소성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선고가 있었음. 이에 따라 정서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 대해 자격 재교부 금지 기한이 정지되어 자격 재교부가 가능한 실정으로, 자격을 재교부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놀봄교실 등 다른 시설에도 취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린이집 취업 시 이수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재교부 하는 단계에서도 이수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현행법상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등 보육자격의 재교부 제한 기간 설정을 지방자치단체가 맡고 있어, 범죄의 경중에 대한 판단과 적용이 지자체별로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재교부 하는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 이내에 범죄의 경중에 따라 자격 재교부의 제한 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자격 재교부 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위헌으로 판결받은 법률을 개정하고 어린이집 외에 유치원, 놀봄교실 등 다른 시설의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한국보육진흥원의 보육자격 취소·정지 등에 관한 업무 위탁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별 차등없는 안전한 보육환경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16조 및 제48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윤상열)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이하 “전력자”라 함)에게 장기간이 지나야지만 어린이집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음.

헌법재판소는 아동학대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어린이집 취업을 제한하는 기간을 달리 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므로,

개정안은 현행 조항의 20년(금고 이상의 형)과 10년(벌금형)이라는 법정 기한은 상한으로 하되, 교육부령으로 세부 기한을 규정하도록 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죄질, 재범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결격사유 기간을 세분화함으로써 기존 위헌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런데 「아동복지법」은 유사한 사유로 위헌 판결을 받아 2018년에 이미 개정을 한 바 있음.

즉, 전력자는 기존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10년이 법정 결격사유 기한으로서 아동학대범죄의 죄질, 경중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10년 동안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었던 반면,

2018년에 개정된 「아동복지법」은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판결을 내림과 동시에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하도록 하

고 있음.

이는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양형과 동시에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기간도 함께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죄질, 경중 등을 면밀하게 심사한 법원으로 하여금 취업제한기간도 결정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 보임.

그리고 헌법재판소 판결문에서도 “전력자의 취업제한에 있어서 재범 위험성의 존부와 정도에 관한 구체적인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서는 추후 심도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원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와 같이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개정에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임.

「영유아보육법」 위헌 판결문도 유사하게 법원이 전력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 심사하여야 함을 판시하고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따라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아동복지법」과 유사한 체계를 구성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고민정)

박성준 의원, 문정복 의원, 조정훈 의원, 김대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각의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